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수도사용료를 현행 요금수준에서 업종별 평균 8.6% 인상
(안 별표2, 별표4)
-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180호)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23조”를 “「수도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수도법 시행령」 제15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별표2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요율은 200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가정용	0 ~ 20m ³ (1단계)	360
	21 ~ 30m ³ (2단계)	500
	31 m ³ 이상 (3단계)	860
일반용	0 ~ 100m ³ (1단계)	600
	101 ~ 300m ³ (2단계)	850
	301 ~ 1,000m ³ (3단계)	970
	1,001 ~ 2,000m ³ (4단계)	1,130
	2,001 m ³ 이상 (5단계)	1,270
욕탕용	0 ~ 1,000 m ³ (1단계)	990
	1,001 ~ 1,500m ³ (2단계)	1,090
	1,501 ~ 2,000m ³ (3단계)	1,210
	2,001m ³ 이상 (4단계)	1,280
전 용 공업용	계약m ³ 당	300
	초과m ³ 당	42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m ³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5조 관련)

(단위: 원)

구경별	요 금	비 고
13 mm	960	
20 mm	2,700	
25 mm	4,350	
32 mm	7,740	
40 mm	13,060	
50 mm	20,020	
80 mm	55,730	
100 mm	82,820	
150 mm	180,450	
200 mm	256,310	
250 mm	345,710	
300 mm	416,930	
350 mm	524,810	
400 mm	571,160	
500 mm	728,390	
500mm이상	1,189,93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35조제4항 적용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중수도 설치 대상등) ①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적용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수도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및 음식점 또는 도서관, 실내수영장, 월 50,000세제곱미터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빌딩 및 공장등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수도법」 제 38조----- ----- ----- ----- ----- 제9조 (중수도 설치 대상등) ①----- ----- ----- ----- -----. ②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 6호----- ----- ----- ----- ----- -----	• 수도법 전면개정으로 조변경 • 수도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조변경

현행				개정안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업종별	단계별	요금	비고	업종별	단계별	요금
가정용	0 ~ 20㎥ (1단계)	300		가정용	0 ~ 20㎥ (1단계)	360
	21 ~ 30㎥ (2단계)	430			21 ~ 30㎥ (2단계)	500
	31 ㎥ 이상 (3단계)	720			31 ㎥ 이상 (3단계)	860
일반용	0 ~ 100 ㎥ (1 단계)	520		일반용	0 ~ 100 ㎥ (1 단계)	600
	101 ~ 300 ㎥ (2단계)	730			101 ~ 300 ㎥ (2단계)	850
	301 ~ 1,000 ㎥ (3 단계)	830			301 ~ 1,000 ㎥ (3 단계)	970
	1,001 ~ 2,000 ㎥ (4 단계)	970			1,001 ~ 2,000 ㎥ (4 단계)	1,130
	2,001 ㎥ 이상 (5 단계)	1,090			2,001 ㎥ 이상 (5 단계)	1,27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90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990
	1,001 ~ 1,500 ㎥ (2 단계)	990			1,001 ~ 1,500 ㎥ (2 단계)	1,090
	1,501 ~ 2,000 ㎥ (3 단계)	1,100			1,501 ~ 2,000 ㎥ (3 단계)	1,210
	2,001 ㎥ 이상 (4 단계)	1,160			2,001 ㎥ 이상 (4 단계)	1,280
전 용 공업용	계약 ㎥ 당	280		전 용 공업용	계약 ㎥ 당	300
	초과 ㎥ 당	390			초과 ㎥ 당	42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 당 요금임.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 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요율 적용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 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요율 적용		

현행			개정안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조례 제35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조례 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금	비고	구경별	요금	비고
13 mm	910		13 mm	960	
20 mm	2,550		20 mm	2,700	
25 mm	4,110		25 mm	4,350	
32 mm	7,300		32 mm	7,740	
40 mm	12,330		40 mm	13,060	
50 mm	18,910		50 mm	20,020	
80 mm	52,610		80 mm	55,730	
100 mm	78,190		100 mm	82,820	
150 mm	170,360		150 mm	180,450	
200 mm	241,980		200 mm	256,310	
250 mm	326,390		250 mm	345,710	
300 mm	393,630		300 mm	416,930	
350 mm	495,480		350 mm	524,810	
400 mm	539,240		400 mm	571,160	
500 mm	687,680		500 mm	728,390	
500mm이상	1,123,430		500mm이상	1,189,93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35조 제4항 각호 적용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35조 제4항 적용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 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 2005.12.27)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